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최재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412
----------	------

발의연월일 : 2023. 11. 23.

발의의원 : 최재규 의원, 박주용 의원,
신달호 의원

1. 제안이유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스포츠클럽법」에 따라 스포츠클럽을 통해 전문선수를 양성하고 대구광역시 달성군의 체육 진흥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 및 군수의 책무 규정(안 제2조~제3조)
- 나. 스포츠클럽의 지원내용 및 범위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4조)
- 다. 스포츠클럽의 회계관리 및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5조~제6조)
- 라. 스포츠클럽의 보조금등 행·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규정(안 제7조)

3. 제정 조례안 : “붙임”

4. 관계법령 : 「스포츠클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대구광역시 달성군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스포츠클럽법」 제3조에 따라 대구광역시 달성군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달성군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법인 또는 단체로서, 주사무소가 대구광역시 달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 있는 것을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법 제2조제2호를 따른다.
3. “공공체육시설” (이하 “체육시설”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직접 또는 위탁하여 관리, 운영 중인 체육시설로,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3조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대구광역시 달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스포츠클럽의 지속적 육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하고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원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 및 범위) ①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관리를 위탁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공유재산관리 조례」 및 「대구광역시 달성군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

한다.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스포츠클럽의 육성에 필요한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지정스포츠클럽의 경우 법 제13조제1항 및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라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군수는 법 제1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 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허가신청의 시기, 방법 및 허가우선순위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4조 및 제5조를 준용한다.

④ 군수는 법 제15조제3항 및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스포츠클럽의 체육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 감면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제14조를 준용한다.

제5조(회계관리) ① 스포츠클럽은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및 재정적 지원금(이하 “보조금등”이라 한다)의 효율적인 관리·운용과 회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회계책임자를 지정·운영하여야 한다.

② 스포츠클럽은 보조금등을 적정하게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부를 비치하고 모든 수입과 지출에 대한 사항을 기록한 후 관계증빙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6조(지도·감독) ① 군수는 법 제20조에 따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 및 보조금등을 지원받은 사항 등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하여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매년 한 차례 이상 지도·감독을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지도·감독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경우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은 시정요구일 부터 30일 이내에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해당 클럽이 정당한 사유 없이 제2항을 위반한 때에는

보조금 지원을 중단할 수 있다.

제7조(행·재정적 지원 등) ① 제4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등의 지급 절차 및 관리, 환수절차·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을 따르거나 「대구광역시 달성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② 군수는 제6조의 지도·감독 결과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등을 지급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지급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를 준용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스포츠클럽법」 제9조에 따른 지정스포츠클럽(이하 “지정스포츠클럽”이라 한다)에서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3의3. 지정스포츠클럽의 강습 등 체육활동

□ 「스포츠클럽법(법률)」(2021.6.15. 제정, 2022.6.16. 시행)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스포츠클럽”이란 회원의 정기적인 체육활동을 위하여 제6조에 따라 등록을 하고 지역사회에 체육활동 진흥을 위하여 운영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2. “지정스포츠클럽”이란 스포츠클럽 중에서 제9조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스포츠클럽을 말한다.
3. “스포츠클럽회원”이란 스포츠클럽의 시설이나 프로그램을 이용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에 가입하여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활동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의 지원 및 진흥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스포츠클럽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의 시책을 수립하고 스포츠클럽을 안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스포츠클럽 진흥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9조(지정스포츠클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스포츠클럽 중에서 지정스포츠클럽을 지정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과 「학교체육 진흥법」에 따른 학교스포츠클럽 및 학교운동부와의 연계
2. 종목별 전문선수의 육성
3. 연령·지역·성별 특성을 반영한 스포츠 프로그램의 운영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초 종목 및 비인기 종목의 육성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스포츠클럽이 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③ 지정스포츠클럽의 지정 요건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선수 육성 지원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 체육 발전을 위하여 지정스포츠클럽에서 우수한 선수를 발굴·육성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 등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공유재산의 우선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공유재산 중 체육시설의 사용을 허가하거나 그 관리를 위탁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 및 제27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체육시설에 대하여 우선하여 수의의 방법으로 허가하거나 수의계약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이나 그 밖의 다른 법률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20조(보고·검사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스포츠클럽 및 지정스포츠클럽에 그 업무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업소·사업장 등에 출입하여 장부·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 「스포츠클럽법 시행령(대통령령)」 (2022.6.15. 제정, 2022.6.16. 시행)

제9조(선수의 육성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지정스포츠클럽에 다음 각 호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스포츠클럽의 운영비 지원
2. 수준별·종목별 스포츠클럽 대회의 개최와 홍보에 필요한 비용 지원
3. 그 밖에 우수한 선수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제11조(전문체육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사용료의 감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스포츠클럽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전문체육시설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스포츠클럽의 행사·강습·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범위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지정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100 이하
2. 지정스포츠클럽을 제외한 스포츠클럽: 사용료의 100분의 80 이하

□ 「대구광역시 달성군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조례)」 (2023.9.27. 일부개정·시행)

제3조(명칭 및 위치)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제4조(사용허가) 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달성군수(이하 “군수” 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제1항의 허가신청에 있어 전용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사용내역 등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개인이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용료를 납입하고 사용권을 교부받음으로써 허가된 것으로 본다.

제5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2인(단체) 이상 경합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는 행사
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3. 대한체육회 또는 그 가맹경기단체 및 회원단체가 주최(관)하는 경기 또는 행사
4.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5. 직장(단체)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행사
6. 경기연습·개인연습·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
7. 체육활동 이외의 문화행사·공연·전람·전시 등 행사

제14조(사용료의 감면) ① 군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대구광역시, 달성군이 주최하는 각종 경기대회 및 행사 : 전액
2. 군을 대표하여 각종 경기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연습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전액
3. 어린이 및 청소년 육성을 위한 학교 주관 경기 행사 : 100분의 30
4. (삭제)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100분의 50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노인복지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경로우대자,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보호자 1인 포함)
 -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다.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자.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6. 국민체육센터 여성수영 율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가임(可妊) 여성 : 100분의 10

7. 히딩크 드림필드 풋살경기장 이용 등록장애인 및 장애인 시설·단체 : 전액

8. 그 밖에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 : 80%이내

② 제1항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라 둘 이상의 감면사유에 해당하면 그 중 감면율이 높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용료를 적용한다.

③ 군수는 달성군 소재 각급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등록된 축구부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의 무료사용 허가신청을 한 경우 다른 사용신청자들의 대관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 1일·주간 4시간 이내를 1회로, 월 5회까지 무료사용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④ 군수는 대구광역시 축구협회에 가입된 유소년 축구클럽(단체)가 [별표 2] 체육시설 중 축구장을 일정 기일이나 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 전용사용료 중 평일·주간 사용료에 한하여 100분의 30을 감면할 수 있다.